

■ 목 차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한국 증권회사의 중국 부동산 투자 관련 법률실사 및 자문 2
 한국 자산운용사의 중국 지주회사 지분 인수 관련 자문 2
 한국 바이오회사의 중국 진출 관련 자문 3
 한국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신용장 대금 청구 및 신용장 사기 사건 관련 소송 3
 중국 판매회사를 대리하여 한국 판매권취소 관련 손해배상소송 4
 한국 건설회사의 중국자회사와 중국부동산판매대행회사 간의 중재 4
 [베트남] 한국 건설회사의 베트남 진출 관련 자문 5
 한국 의료용기 제조회사의 베트남 진출 관련 자문 5
 한국 제조회사의 베트남 현지법인 증자 관련 자문 6
 [캄보디아] 한국 건설회사의 캄보디아 자회사 청산 관련 자문 7
 우리은행의 캄보디아 마이크로파이낸스 업체 말리스 인수 관련 자문 7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국경간담보외환관리규정 시행 8
 [베트남] 주택법 개정 10
 [태국] 태국 노동법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이슈 13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2014년 개정) 공표 15
 「국경간담보외환관리규정」 공표 15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2014년 개정) 공표 15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 공표 16
 [베트남] 2014년 베트남 세법 개정 주요 내용 17
 [캄보디아] 세무 대리인에 대한 규정 발표(재경부, 2014년 4월 12일) 19
 수출용 쌀 판매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시행(재경부, 2014년 3월 19일) 19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

한국 증권회사의 중국 부동산 투자 관련 법률실사 및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증권회사의 중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법률실사 및 관련 계약 검토 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진숙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이범열 변호사 경영동 중국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한국 자산운용사의 중국 지주회사 지분 인수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자산운용사의 중국 지주회사 지분 인수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명한석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강재영 변호사 임이지 변호사 이민희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한국 바이오회사의 중국 진출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바이오회사의 중국 진출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서준희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한국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신용장 대금 청구 및 신용장 사기 사건 관련 소송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신용장 대금 청구 및 신용장 사기 등의 사기 사건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경염동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중국 판매회사를 대리하여 한국 판매권취소 관련 손해배상소송

법무법인 지평은 중국 판매회사를 대리하여 한국에서 판매권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염동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한국 건설회사의 중국자회사와 중국부동산판매대행회사 간의 중재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건설회사의 중국자회사와 중국부동산판매대행회사 간의 중재를 대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염동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베트남 ■

한국 건설회사의 베트남 진출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건설회사의 베트남 진출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유동호 미국변호사 NGUYEN Thi Huong
베트남변호사

한국 의료용기 제조회사의 베트남 진출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의료용기 제조회사의 베트남 진출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유동호 미국변호사 NGUYEN Thi Huong
베트남변호사

한국 제조회사의 베트남 현지법인 증자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제조회사의 베트남 현지법인 증자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유동호 미국변호사 NGUYEN Thi Huong
베트남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캄보디아 ■

한국 건설회사의 캄보디아 자회사 청산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건설회사의 자회사 청산을 위해 필요한 청산 신청과 채권자에 대한 고지·통보 등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형근 변호사



CHEA Somala
캄보디아 변호사

우리은행의 캄보디아 마이크로파이낸스 업체 말리스 인수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우리은행의 캄보디아 마이크로파이낸스 업체인 말리스(Malis Finance Plc.)의 인수 관련하여 법률 실사 및 계약 검토 등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심희정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형근 변호사



CHEA Somala
캄보디아 변호사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

국경간담보외환관리규정 시행



(법무법인 지평 김옥림 중국변호사)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 5월 12일에 「국경간담보외환관리규정(跨境擔保外匯管理規定)」(이하 '국경간담보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경간담보규정'은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국경간담보'라 함은 담보계약을 이행함으로써 국경을 넘는 자금 지급 또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유발할 수 있는 담보행위를 가리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국경간담보'를 '내국인담보하의 해외대출(內保外貸)'과 '외국인담보하의 국내대출(外保內貸)', '기타 형식의 국경간담보'로 구분하여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국인담보하의 해외대출'이라 함은 담보인의 등록지는 중국 경내이나 채권자와 채무자의 등록지는 모두 중국 경외인 경우를 가리키며, '외국인담보하의 국내대출'이라 함은 담보인의 등록지는 중국 경외이나 채권자와 채무자의 등록지는 모두 중국 경내인 경우를 가리킵니다. '기타 형식의 국경간담보'라 함은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국경간담보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경을 넘는 담보행위와 관련하여 「경내기관대외담보관리방법(境內機構對外擔保管理辦法)」을 기본 규정으로 하여 동 규정의 실시세칙 및 중국 외환관리국에서 불시에 제정한 일련의 단편적인 규정(이하 '대외담보 관련 규정'으로 통칭)에 의하여 규제하여 왔습니다. '대외담보 관련 규정'에서는 '대외담보'를 담보인은 중국 경내기관, 채권자는 중국 경외기관, 채무자는 중국 경내기관이거나 또는 중국 경내기관이 지분투자를 한 경외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담보'와 비교할 때 '국경간담보'는 '내국인담보하의 해외대출'과 '기타 형식의 국경간담보' 유형이

추가되어 국경을 넘는 담보행위가 보다 다양한 구조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내국인담보하의 해외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차입자금에 대하여 외환당국의 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 경내 법인에 대출하거나 또는 지분투자를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중국 경내로 유입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경간담보'는 채권자, 채무자, 담보인 간의 관계에 대하여 외국인의 사채 발행을 위한 담보를 제외하고 지분 관련성에 대한 요건을 취소하였습니다. 즉 기존 '대외담보 관련 규정' 체계하에서는 경내기관이 경외기관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경외기관은 경내기관이 지분참여를 한 경우로 자격제한을 두어 사실상 외국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국인 범위를 크게 제한하였습니다.

그밖에 '국경간담보규정'에서는 '중국 내국인투자 기업'과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 '대외담보 관련 규정'하에서의 제도적인 차이를 두지 않아 '중국 내국인투자 기업'도 보다 용이하게 '국경간담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국인 담보하의 해외대출'의 경우에 한정하여 국경간담보계약 후 등기를 하도록 하는 외 '외국인 담보하의 국내대출' 및 '기타 형식의 국경간담보'에 대하여서는 사전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담보의무 이행 후 이로 발생하는 대외 채권·채무에 대하여 사후 등기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국경간담보규정'과 '대외담보 관련 규정'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경간담보규정'의 발표와 함께 「경내기관대외담보관리방법」을 제외한 '대외담보 관련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향후 국경을 넘는 담보행위는 '국경간담보규정'에 의하여 일원화된 관리를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단, '국경간담보규정' 상의 일부 내용, 예를 들어 '외환국의 국경간담보계약에 대한 승인, 심사, 신고는 이러한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는 내용은 사법해석에 의하여 '국가 주무관청의 승인 또는 등기를 득하지 않은 대외담보계약은 무효'로 재확인된 '대외담보 관련 규정' 상의 내용과 배치되는바, 이러한 사법해석이 최고인민법원에 의하여 수정되지 않는 한 분쟁 발생 시 여전히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국경간담보규정'에 의한 일원화된 관리를 위하여서는 연동하여 개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베트남 ■

주택법 개정



(법무법인 지평 유동호 미국변호사)

베트남 정부는 최근 주택법에 대한 11차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국회는 2014년 내 새로운 주택법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주택법은 2005년 공표된 기존 주택법 및 2008년 국회가 발표한 결의를 대체하게 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2009년 외국인 주택 구입지침을 공표하는 등 개혁을 단행했으나, 주택 구입의 자격이 제한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활동은 미미했습니다. 새로운 주택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외국인 개인과 외국 기업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규제완화 방침을 통하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던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규제완화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상징적 구호에 그칠지 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 중 눈여겨볼 만한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소유의 주체

현행법에 따르면, "베트남 개인 및 단체"를 제외한 "베트남교포", "외국 단체 및 개인"은 주택의 구입 및 소유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의 경우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12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을 뿐 아니라 대 베트남 직접 투자자, 베트남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베트남에 기여한 공로로 베트남 주석으로부터 훈/포상을 받은 사람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개인이 "베트남에 입국이 허가"된 경우 베트남의 주택을 구입 및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외국인 개인의 베트남 거주기간에 대한 기존 규정은 최종안에

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만, 외국인 개인이 아파트 및 주택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2.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 단체”의 범위 확장

현행법상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외국 단체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개정안은 “외국 단체”의 범위를 외국 기업 또는 외국 투자펀드(부동산업 관련 외국 투자펀드 제외)의 베트남 소재 지사(branches),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s)와 외국은행의 베트남 지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소유 가능한 주택형태

현행법은 외국인 본인이 자신의 거주를 위한 목적의 아파트 1채만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아파트 외 형태의 주택을 구매할 수 없으며 임대업 목적으로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개인이나 기업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타 형태의 주택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주택개발 프로젝트 지역 내부에 위치하고 주택의 가격이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나, 큰 장벽이 되진 않아 보입니다. 단, 개정안은 외국인 개인이나 단체가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숫자와 부동산개발업자 이외로부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최종 통과될지 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통과된 후 발표될 세부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주택 소유기간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개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0년이지만 법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단체의 경우 투자허가서에 명시된 투자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 개인의 주택 임대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개인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한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하기 전에 지역 관계당국에 사전공지를 해야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큰 변화입니다. 반면 외국 단체의 경우 업체 명의로 매입한 주택을 근로자의 숙소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기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해외업무 논단 - 태국 ■

태국 노동법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이슈



(법무법인 지평 임이지 변호사)

1. 태국 노동법 체계

태국에는 노동과 관련된 8개의 법률이 존재하며, 그 중 노동보호법(Labor Protection Act)과 노동관계법(Labor Relation Act)이 중심이 됩니다. 노동보호법은 고용, 복지, 해고 등 근로자들의 근로기준에 관한 기본법이고, 노동관계법은 노사분쟁, 노동조합 등에 관한 기본법이 됩니다. 이하에서는 태국 노동 관련 법령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관련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해고 및 퇴직금 관련 문제

가.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방법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기간의 종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고, 별도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통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리 근로계약 해지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해지의 통지가 된 시점의 다음 급여 지급일에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 등 금전 지급

만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태국의 제반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금 및 기타 혜택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노동보호법 제118조).

고용 기간	퇴직금
120일 이상 1년 미만	최종 급여 30일 분
1년 이상 3년 미만	최종 급여 90일 분
3년 이상 6년 미만	최종 급여 180일 분
6년 이상 10년 미만	최종 급여 240일 분
10년 이상	최종 급여 300일 분

다만, 근로자에게 ① 불성실한 직무수행, ② 사용자에게 대한 의도적 가해행위, ③ 과실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 유발, ④ 사용자의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취업규칙, 관련 규정, 사용자의 명령을 위반(중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서면 경고가 필요 없음), ⑤ 정당한 이유 없는 3일 이상 결근, ⑥ 확정판결에 의한 수감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노동보호법 제119조).

즉, 태국노동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13개월을 근무한 자에 대한 퇴직금이 90일분의 임금인 점 등 고용기간과 퇴직금 액수가 정비례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해고 및 퇴직금 이슈 이외에도 태국 노동 관련 법령은 대한민국의 노동법령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태국에 진출하여 태국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체결 및 운용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2014년 개정) 공표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이하 '조례')는 총 10장 9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대한 개정은 상표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세분화하기 위한 것이며 등록상표전용권리에 대한 보호 및 상표대리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는 상표분할신청제도를 규정하였으며, '상표의 국제등록'을 추가로 규정하면서 상표국제등록의 범위, 상표국제등록의 요건, 기본절차 등에 대하여도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경간담보외환관리규정」 공표

2014년 5월 12일, 국가 외환관리국은 「국경간담보외환관리규정」(이하 '국경간담보규정')를 발표하였으며,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경간담보규정'은 '내국인담보하의 해외대출'을 위한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중국 내국인 기업의 사전 승인을 취소하는 등 기존의 대외담보와 비교할 때 자격을 완화,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경을 넘는 담보 제공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2014년 개정) 공표

지난 2014년 4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이하 '환경보호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 의해 통과되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환경보호법은 중국의 현행 전문분야에 대한 행정법 중 가장 엄격한 법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법은 다각도로 정부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법률책임을 강화하고 처벌조치를 엄격히 하였습니다.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 공표

2014년 4월 10일, 상해시 인민정부는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이하 '실시세칙')을 발표하였으며 발표 당일부턴 시행되었습니다. 실시세칙은 향후 외국인투자기업이 게임 및 오락설비의 생산·판매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문화주무관청에서 심사한 게임 및 오락 설비는 국내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시세칙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 비율에 대한 제한을 취소하여 외국인이 100% 지분의 기업을 설립하여 상해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베트남 ■

2014년 베트남 세법 개정 주요 내용

1. 수출용역(Exported services)에 대한 영세율 적용조건

개정된 베트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인 Decree 209/2013/ND-CP(이하 "Decree 209")와 시행규칙인 Circular 219/2013/TT-BTC(이하 "Circular 219")가 발표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 수출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요건은 지속적인 쟁점이었습니다. 2013년까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용역의 수령자가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Decree 209는 베트남 외에서 용역이 소비되어야 한다(consumed outside Vietnam)는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수출용역이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용역수령자에게 제공된다고 할지라도 용역이 베트남과 어떤 형태로든 연관될 경우 베트남 정부는 해당 용역이 결과적으로 베트남 내에서 소비되었다고 보아 10% 부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출용역에 대하여 0% 부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적용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 베트남 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이하 "APA"))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중 현지 세무당국의 이전가격 관련 과세로 인하여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당국의 과세권 행사를 부인할 별다른 논리가 없어 업체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APA의 적용에 대한 시행규칙 Circular 201/2013/TT-BTC(이하 "Circular 201")를 발표하였으며 2014년 2월 5일 발효되었습니다.

APA의 목적은 베트남 세무당국 및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 책정에 대한 사전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써 이전가격 관련 과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납세자는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의 위험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노동조합기부금에 대한 시행규칙

노동조합법(Law 12/2012/QH13)의 하위 규정으로 노동조합기부금에 대한 시행령 Decree 191/2013/ND-CP(이하 "Decree 191")가 공표되었습니다. Decree 191에 의하면 모든 회사는 회사 내에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조합기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금액은 급여의 2%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별 노동조합료는 직원이 자체비용으로 부담합니다.

Decree 191은 2014년 1월 10일부터 발효되었고 노동조합기부금은 사회보험료와 동일하게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기부금의 납부 의무는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나, 소급 적용되는 기부금의 납입 기한이나 납입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7조에 근거하여, 노동조합기부금은 노동조합활동을 조직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정부정책 홍보활동, 조합 활성화 활동, 조합간부의 비용지급, 직원들에 대한 문화활동, 스포츠활동, 조합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타 노조활동의 재정적 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노동조합기부금을 사용하는 구체적 절차는 불확실합니다. 노동조합법으로 정해진 고용주의 노동조합기부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비로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회사가 부담하는 노동조합기부금은 비용 공제사항입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캄보디아 ■

세무 대리인에 대한 규정 발표(재경부, 2014년 4월 12일)

캄보디아 재경부는 2014년 4월 12일 세무 대리인에 대한 규정(Prakas on the Tax Service Agent)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세무 신고 대행 등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에 신청비를 납부하고(자연인의 경우는 1,000,000리엘, 법인의 경우는 2,000,000리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라이선스 없이 세무 신고 대행 업무를 하는 자에게는 10,000,000리엘의 벌금이 부과되며, 라이선스가 없는 자에게 세무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도 5,000,000리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무 대리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는데, 조만간 세무 대리인의 자격 요건을 명문화한 후 위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세무 신고와 관련한 사기로 많은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정부는 향후 위와 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부적격자에 의한 세무 신고 대행 업무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출용 쌀 판매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시행(재경부, 2014년 3월 19일)

재경부에 의해 제정된 수출용 쌀 판매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Prakas on the implementation for the contractors who supply rice for rice exporting)이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쌀 수출 라이선스를 가진 자에게 외국으로의 수출 목적으로 쌀을 판매한 자에게는 판매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를 위해서는 사전에 국세청(General Tax Department)에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1년 마다 심사를 거쳐 면제 혜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위와 같은 규정의 시행으로 전년도 보다 더 많은 쌀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쌀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역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